

기술 2019-04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2020. 1. 1



목 차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	7
응시자격 조건체계	18
응시자격	19
자격검정 응시절차	22
지역본부 및 지사 안내	23
검정기준 / 검정방법	24
검정수수료	25
국가기술 자격제도 안내	27
과정평가형 제도	38

【 알 림 】

■ 정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1. 수험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홈페이지 : www.q-net.or.kr

2. 수험원서 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3. 수험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필·실기시험 면제자 : 원하는 일자에 접수가능

■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회별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별 시행회”를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필식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실기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	급	부	시험시간	비고
기	술	사	-	09:00 ~ 17:20
기	능	장	1부	09:30 ~ 제한시간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1부	09:30 ~ 제한시간	2부	13:30 ~ 제한시간
	2부	13:30 ~ 제한시간		
기	능	사	1부	09:30 ~ 10:30
		2부	11:30 ~ 12:30	

○ 입실시간은 시험시작 30분 전임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서비스) 등급은 종목별 시험시간이 상이함
○ 종목별 시험 시작시간은 별도 공고
○ 기능장, 기능사 등급은 필답형 실기시험만 해당
○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등급은 지필식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실기 시험이 해당

■ **CBT 필기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	급	부	입실시간	시험시간	비고
기능장, 기능사	1부	09:10	09:30 ~ 10:30	○ 입실시간은 시험 시작 20분 전임 ○ 산업기사 등급은 종목별 시험시간이 상이함 ○ 종목별 시험 시작 시간은 별도 공고 ○ 산업기사 등급은 기사 4회 CBT 도입 되는 일부종목만 해당	
	2부	09:40	10:00 ~ 11:00		
	3부	10:40	11:00 ~ 12:00		
	4부	11:10	11:30 ~ 12:30		
	5부	12:40	13:00 ~ 14:00		
	6부	13:10	13:30 ~ 14:30		
	7부	14:10	14:30 ~ 15:30		
	8부	14:40	15:00 ~ 16:00		
	9부	15:40	16:00 ~ 17:00		
	10부	16:10	16:30 ~ 17:30		

등	급	부	입실시간	시험시간	비고
산 업 기 사		1부	08:40	09:00~제한시간	
		2부	09:10	09:30~제한시간	
		3부	11:10	11:30~제한시간	
		4부	12:10	12:30~제한시간	
		5부	14:10	14:30~제한시간	
		6부	14:40	15:00~제한시간	

* 시행지역별 접수인원에 따라 일일 시행횟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원거리 시험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기능장, 기능사 및 산업기사(일부종목) CBT 필기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회별 응시기회는 종목당 1회로 한함
-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함
-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회별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기사 제4회 시행 종목 중 산업기사 일부종목 CBT 필기시험 시행 예정입니다.

- 기사 제4회 필기시험기간 중 지필식 시험은 첫날 1일만 시행하며, 종목별 CBT 시험 상세일정은 기사 제4회 필기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 안내합니다.
- 기사 제4회 시행하는 기사, 산업기사 종목 중 일부는 시험 시작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종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이내**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군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인 무효처리되니 착오없이시기 바랍니다.**

※ 단, 당회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실기시험 원서접수 첫 날부터 마감일 까지 제출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함
- 외국서류 구비 사유로 기간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지정된 기간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제출된 응시자격서류는 D/B로 구축하여 보관·관리하므로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이전에도 제출할 수 있음(단, 경력서류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가지를 첨부해야만 함)
 -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면 공단 직원이 경력 증명 확인 가능(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 응시자격서류로 병적증명서 제출 시 병과(특기) 및 병과(특기) 경력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입니다.
-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는 4일간(일부시험 제외)이며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입니다.
- 실기(면접)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 실기시험 접수기간 이전(필기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전일까지)에도 응시자격서류 사전제출이 가능합니다.
 - 경력증명서류는 4대 보험 가입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제출 가능합니다.
 - 학력 및 경력증명서류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제출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불합격자(자격미달,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고하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수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평일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종목은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 지참물 미지참 시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주관식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필답형 실기시험)**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번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됩니다.
 - 토요일 시행 : 2020년 기술사 전회 필기시험, 기능장 제68회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기사 제2·3회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기능사 제3·4회 필답형 실기시험
 - 일요일 시행 : 2020년 기능장 제67회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기사 제1·4회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기능사 제1·2회 필답형 실기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채점방법에 따라 이원화하여 실시합니다.
 - 현지채점종목 : 1차 합격자 발표일
 - 중앙채점(복합형종목 포함)종목 : 2차 합격자 발표일
- **상시검정 안내**
 - '20년도 상시검정 시행종목은 12종목이며, 해당종목의 정기검정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 상시검정 시행종목(12종목) : 굴삭기운전기능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 ※ 상시 시행종목은 산업계 요구 등에 따라 2020년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취업 및 창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설 분야 기능사등급 일부 종목에 대하여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 관련 규정 안내

- 공단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됩니다.
-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가 불가한 전자·통신기기 소지·착용 시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됩니다.
- 기능사 등급은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만 사용가능합니다.(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 제반여건 조성이후 별도 공지 예정)
- 공학용계산기 허용기준

- ▶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 ▶ 허용군인 공학용계산기는 큐넷에서 확인 가능
- ▶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주관식 답안 작성 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가능합니다.(연필, 유색 필기구 등 사용불가)

■ 자격증 교부방식 안내

- 상장형자격증은 인터넷으로 합격자발표당일부터 발급 가능
- 수첩형자격증은 인터넷 신청 후 우편수령만 가능하며, 내방신청은 폐지 예정

■ 기타 안내사항

1.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입니다.
2. 접수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수수료 환불 및 접수취소 관련 사항은 www.q-net.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이중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접수된 응시자격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6.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이오니, 원서접수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7.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8. 종목별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시험시작시간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9.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종목별, 회별, 시행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원서접수 시 특정일·특정장소의 접수인원이 일정 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시험일정이 통폐합됨에 따라 시험일 및 시험장소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모든 응시자격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12. 실기시험 접수기간과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가 불가한 전자 및 통신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소지·착용 시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4. 전자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필요시 수험자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으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공단 인정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하며,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의문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 또는 공단 소속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①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회별 통합

- 기존에 운영되었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을 타 회별(기능사 제2, 3, 4회)과 통합 시행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검정 신청기관은 원서 접수기간 전, 공단이 정하는 별도기간까지 관련 서류 사전제출 요망

② 상시검정 종목 조정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2종목을 상시검정에서 정기검정으로 전환
-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취업 및 창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설분야 기능사 등급 일부종목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할 수 있음

③ 휴일 등 시험원서 및 응시자격서류 접수 미실시

- 국회의원 선거일[4.15(수)], 공단 창립기념일[3.18(수)] 및 휴일은 실기원서 및 응시자격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④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단축

- 필기시험 원서접수 기간을 기존의 7일에서 4일로 단축

⑤ 산업기사 일부종목 CBT 시행

- 2020년 기사 제4회 시행 산업기사 일부종목* 대상으로 CBT 시행
- * CBT로 시행되는 종목은 기사 제4회 필기시험 원서접수 전 별도 공고
- CBT 도입에 따라 기사 제4회 필기시험 기간을 현행 1일에서 7일로 조정

⑥ 원서접수 첫날 시작시간 조정

- 원서접수 첫날 시작시간을 기존의 09:00에서 10:00으로 조정

⑦ 검정시행 유예제도 도입 검토

- 검정수요, 산업동향 등 고려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의 경우 검정시행을 익년으로 유예하는 제도 도입 검토(추후 도입 예정)

⑧ 2020년 신규 정기검정 시행(2019년 신설 자격종목)

등 급	종목명	소관부처	시행회별
기사	방재기사	행정안전부	기사 제3회
	환경위해관리기사	환경부	
	로봇기구개발기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사 제4회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산업통상자원부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기사	보석디자인산업기사	고용노동부	기사 제3회
	가구제작산업기사	국토교통부	
	버섯산업기사	농촌진흥청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산업통상자원부	
	화훼장식산업기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사 제4회
	보석감정산업기사*	고용노동부	
기능사	떡제조기능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사 제3·4회

※ 2019년 신설 종목 수시검정(필기시험 '19. 11. 2 시행, 실기시험 '20년 상반기 시행 예정)과 별도로 시행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

1. 정기검정 시행일정

등급	회 별	필기시험			응시자격서류제출 (필기시험합격자결정) 방문제출 (휴일제외)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시 험 행	합격 (예정)자 발표		원서접수	시 시 험 행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인터넷			
기술사	제120회	1.7~1.10	2.1(토)	3.13	3.16~3.26 (휴일, 3.18 제외)	3.16~3.17 3.19~3.20	5.9~5.19	6.5
	제121회	3.16~3.17 3.19~3.20	4.11(토)	6.5	6.8~6.17 (휴일제외)	6.8~6.11	7.18~7.28	8.14
	제122회	6.9~6.12	7.4(토)	8.28	8.31~9.9 (휴일제외)	8.31~9.3	10.17~10.27	11.13
기능장	제67회	3.10~3.13	4.5(일)	4.10	4.13~4.23 (휴일, 4.15 제외)	4.13~4.14 4.16~4.17	6.13~6.28	7.10(1차) 7.17(2차)
	제68회	6.2~6.5	7.4(토)	7.17	7.20~7.29 (휴일제외)	7.20~7.23	8.29~9.13	9.25(1차) 10.8(2차)
기사 (산업 기사· 서비스)	제1회	2.25~2.28	3.22(일)	4.3	4.6~4.16 (휴일, 4.15 제외)	4.6~4.9	5.9~5.24	6.12(1차) 6.26(2차)
	제2회	5.12~5.15	6.6(토)	6.26	6.29~7.8 (휴일제외)	6.29~7.2	7.25~8.9	8.28(1차) 9.11(2차)
	제3회	7.28~7.31	8.22(토)	9.11	9.14~9.23 (휴일제외)	9.14~9.17	10.17~11.1	11.13(1차) 11.27(2차)
	제4회	8.25~8.28	9.20~9.26	10.8	10.12~10.21 (휴일제외)	10.12~10.15	11.14~11.29	12.11(1차) 12.24(2차)
기능사	제1회	1.14~1.17	2.9~2.15	2.28	해당없음	3.2~3.5	4.4~4.19	4.29(1차) 5.8(2차)
	제2회	3.24~3.27	4.19~4.25	5.8	해당없음	5.11~5.14	6.13~6.28	7.10(1차) 7.17(2차)
	제3회	6.2~6.5	6.28~7.4	7.17	해당없음	7.20~7.23	8.29~9.13	9.25(1차) 10.8(2차)
	제4회	9.8~9.11	10.11~10.17	10.23	해당없음	10.26~10.29	11.28~12.13	12.24(1차) 12.31(2차)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검정 신청기관은 원서접수기간 전, 공단에서 정하는 별도기간까지 관련 서류 사전제출 요망

2. 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

※ “시행회”란은 “1. 정기검정 시행일정”의 표와 연계하여 확인

- 기술사 종목별 시행회

직 무 분 야	종 목 명	시 행 회	직 무 분 야	종 목 명	시 행 회
안 전 관 리	가 스	120	환경·에너지	대 기 관 리	120
기 계 건 설 기 계		120·122	건 설 도 로 및 공 항		120·121·122
안 전 관 리	건 설 안 전	120·121·122	건 설 도 시 계 획		120·121·122
건 설	건 축 구 조	120·121·122	전 기·전 자 발 송 배 전		120·121·122
건 설	건 축 기 계 설 비	120·121·122	안 전 관 리 비 파 괴 검 사		120
건 설	건 축 시 공	120·121·122	농 립 어 업 산 립		120·122
전 기·전 자	건 축 전 기 설 비	120·121·122	전 기·전 자 산 업 계 측 제 어		121
건 설	건 축 품 질 시 험	120	기 계 산 업 기 계 설 비		120
경영·회계·사	공 장 관 리	121	안 전 관 리 산 업 위 생 관 리		120·122
기 계	공 조 냉 동 기 계	120·121·122	건 설 상 하 수 도		120·121·122
건 설	교 통	120·122	섬 유·의 복 섬 유		121
재 료	금 속 가 공	120	재 료 세 라 믹		121
재 료	금 속 재 료	120	안 전 관 리 소 방		120·121·122
재 료	금 속 제 련	121	환경·에너지	소 음 진 동	122
기 계	금 형	120·121	농 립 어 업 수 산 양 식		120
기 계	기 계	121	식 품 가 공 수 산 제 조		121
안 전 관 리	기 계 안 전	120·121	건 설 수 자 원 개 발		120·122
환경·에너지	기 상 예 보	121	환경·에너지	수 질 관 리	120·122
건 설	농 어 업 토 목	120·121	농 립 어 업 시 설 원 예		121
농 립 어 업	농 화 학	122	식 품 가 공 식 품		120·122

직 무 분 야	종 목 명	시 행 회	직 무 분 야	종 목 명	시 행 회
농 립 어 업	어 로	120	농 립 어 업	축 산	120
재 료	용 접	120·122	건 설	측량및지형공간정보	120·122
섬 유 · 의 복	의 류	121	정 보 통 신	컴 퓨 터 시 스템 응 용	120·122
안 전 관 리	인 간 공 학	121	건 설	토 목 구 조	120·121·122
환경·에너지	자 연 환 경 관 리	121·122	건 설	토 목 시 공	120·121·122
안 전 관 리	전 기 안 전	120·122	건 설	토 목 품 질 시 험	120·121
전 기 · 전 자	전 기 응 용	121·122	환경·에너지	토 양 환 경	121
전 기 · 전 자	전 기 철 도	121·122	건 설	토 질 및 기 초	120·121·122
전 기 · 전 자	전 자 응 용	120	환경·에너지	폐 기 물 처 리	122
정 보 통 신	정 보 관 리	120·121·122	경영·회계·사 무	포 장	120
문 화 · 예 술 · 디자인·방송	제 품 디 자 인	121	재 료	표 면 처 리	120
건 설	조 경	120·121	경영·회계·사 무	품 질 관 리	121·122
기 계	조 선	121	기 계	항 공 기 관	122
농 립 어 업	종 자	120	기 계	항 공 기 체	122
건 설	지 적	120·122	건 설	항 만 및 해 안	120
건 설	지 질 및 지 반	120·122	건 설	해 양	120
기 계	차 량	120·122	화 학	화 공	121
건 설	철 도	120·121·122	안 전 관 리	화 공 안 전	120·122
전 기 · 전 자	철 도 신 호	120·121	광 업 자 원	화 약 류 관 리	121
기 계	철 도 차 량	121·122			

- 기능장 종목별 시행회

* 전 종목 필기시험 CBT 시행

직 무 분 야	종 목 명	시 행 회	직 무 분 야	종 목 명	시 행 회
안 전 관 리	가 스	67·68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이 용	67·68
기 계	건 설 기 계 정 비	67·68	기 계	자 동 차 정 비	67·68
건 설	건 축 목 재 시 공	67	건 설	잠 수	68
건 설	건 축 일 반 시 공	68	전 기·전자	전 기	67·68
인쇄·목재·가구·공예	귀 금 속 가 공	68	전 기·전자	전 자 기 기	67·68
재 료	금 속 재 료	67·68	재 료	제 강	67·68
기 계	금 형 제 작	67	식 품 가 공	제 과	67·68
기 계	기 계 가 공	67·68	재 료	제 선	67·68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미 용	67·68	음식서비스	조 리	67·68
건 설	배 관	67·68	재 료	주 조	68
재 료	압 연	67·68	기 계	철 도 차 량 정 비	67·68
환경·에너지	에 너 지 관 리	67·68	재 료	판 금 제 관	67
재 료	용 접	67·68	재 료	표 면 처 리	68
화 학	위 험 물	67·68			

-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포함) 종목별 시행회

※ 기사 제4회 산업기사 등급 일부종목 필기시험 CBT 시행

♠ : 자격종목 없음

직무분야	종 목 명	시 행 회		직무분야	종 목 명	시 행 회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전 기·전자	3D프린터개발	♠	4	안 전 관 리	건 설 안 전	1·2·4	1·2·4
인쇄·목재·가구·공예	가 구 제 작	♠	3	건 설	건 설 재 료 시 험	1·2·4	1·2
안 전 관 리	가 스	1·2·3	1·2·4	건 설	건 축	1·2·4	1·2·3
기 계	건 설 기 계 설 비	1·2·3	2·3	건 설	건 축 목 공	♠	2
기 계	건 설 기 계 정 비	2	1·3	건 설	건 축 설 비	1·2·4	1·2·4

직무분야	종 목 명	시 행 회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건 설	건축일반시공	♠	2
기 계	공조냉동기계	1·2·3	1·2·3
전 기 · 전 자	광 학	2	♠
전 기 · 전 자	광 학 기 기	♠	4
건 설	교 통	1·2·4	3
보 건 · 의 료	국제의료관광 코 디 네 이 터	♠	2·4
기 계	케도장비정비	4	4
인쇄·목재· 가구·공예	귀 금 속 가 공	♠	3
기 계	그린전동자동차	4	♠
재 료	금 속 재 료	2·3	1·2·4
기 계	기 계 설 계	2	1·2·3
기 계	기 계 정 비	♠	1·2·3
기 계	기 계 조 립	♠	2
환경·에너지	기 상	1·3	♠
환경·에너지	기 상 감 정	4	♠
환경·에너지	농 립 토 양 평 가 관 리	♠	3
기 계	농 업 기 계	3	2·4
안 전 관 리	농작업안전보건	4	♠
안 전 관 리	누설비파괴검사	2·4	♠
환경·에너지	대 기 환 경	1·2·4	1·2·4
건 설	도 시 계 획	1·2·4	♠
전 기 · 전 자	로봇기구개발	4	♠
전 기 · 전 자	로봇소프트웨어 개 발	4	♠
전 기 · 전 자	로봇하드웨어 개 발	4	♠
정 보 통 신	멀 티 미 디 어 콘 텐 츠 제 작 전 문 가	♠	1·3
기 계	메카트로닉스	2	♠

직무분야	종 목 명	시 행 회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화 학	바이오화학제품 제 조	2	3
전 기 · 전 자	반 도 체 설 계	3	2
안 전 관 리	방 사 선 비 파 괴 검 사	1·4	4
건 설	방 수	♠	3
안 전 관 리	방 재	3	♠
건 설	배 관	♠	2
농 립 어 업	버 섯	♠	3
인쇄·목재· 가구·공예	보 석 감 정	♠	4
인쇄·목재· 가구·공예	보 석 디 자 인	♠	3
음식서비스	복 어 조 리	♠	3
정 보 통 신	사 무 자 동 화	♠	1·2·4
기 계	사 출 금 형	♠	1·3
기 계	사출금형설계	2	♠
경영·회계· 사 무	사 회 조 사 분 석 사 1 급	♠	4
경영·회계· 사 무	사 회 조 사 분 석 사 2 급	♠	1·2·3
농 립 어 업	산 림	1·2·3	1·2·3
안 전 관 리	산 업 안 전	1·2·3	1·2·3
안 전 관 리	산업위생관리	1·2·3	1·2·3
환경·에너지	생물분류(동물)	4	♠
환경·에너지	생물분류(식물)	4	♠
기 계	생 산 자 동 화	♠	1·2·3
기 계	설 비 보 전	1·2·4	♠
섬 유 · 의 복	섬 유	2	2
섬 유 · 의 복	섬 유 디 자 인	♠	2
안 전 관 리	소 방 설 비 (기 계 분 야)	1·2·4	1·2·4
안 전 관 리	소 방 설 비 (전 기 분 야)	1·2·4	1·2·4

직무분야	종 목 명	시 행 회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경영·회계· 사무	소비자전문 상담사 1급	♣	4
경영·회계· 사무	소비자전문 상담사 2급	♣	1·2·3
환경·에너지	소음진동	2·4	2
농림어업	수산물식	1·3	3
식품가공	수산물제조	2	♣
환경·에너지	수질환경	1·2·3	1·2·3
이용·숙박· 여행·오락· 스포츠	스포츠경영 관리사	♣	1·2·4
기계	승강기	1·2·4	1·2·4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시각디자인	2	1·2·4
농림어업	시설원예	1	♣
농림어업	식물보호	1·2·4	1·2·4
식품가공	식육가공	4	♣
식품가공	식품	1·2·3	1·2·3
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1·2·4	1·2·4
건설	실내건축	1·2·4	1·2·3
음식서비스	양식조리	♣	3
농림어업	어로	♣	1
농림어업	어업생산관리	1	♣
환경·에너지	에너지관리	1·2·4	1·2·4
환경·에너지	온실가스관리	2·4	2
안전관리	와전류 비파괴검사	2	♣
재료	용접	1·3	1·2·3
화학	위험물	♣	1·2·4
농림어업	유기농업	1·2·3	1
건설	응용지질	2·4	♣

직무분야	종 목 명	시 행 회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전기·전자	의공	1·4	1·4
섬유·의복	의류	2	♣
안전관리	인간공학	1·3	♣
인쇄·목재· 가구·공예	인쇄	2	3
기계	일반기계	1·2·4	♣
음식서비스	일식조리	♣	3
전기·전자	임베디드	4	♣
농림어업	임산가공	2	2
보건·의료	임상심리사1급	♣	4
보건·의료	임상심리사2급	♣	1·3
농림어업	임업종묘	3	♣
안전관리	자기비파괴검사	1·3	1·3
기계	자동차정비	1·2·3	1·2·3
환경·에너지	자연생태복원	1·2·3	3
건설	잠수	♣	3
재료	재료조직평가	♣	3
전기·전자	전기	1·2·3	1·2·3
전기·전자	전기공사	1·2·4	1·2·4
전기·전자	전기철도	3	3
전기·전자	전자	1·2·4	1·2·4
전기·전자	전자계산기	4	♣
전기·전자	전자계산기제어	♣	1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1·3	♣
기계	전자부품장착	♣	4
기계	정밀측정	♣	1·3

직무분야	종 목 명	시 행 회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정 보 통 신	정 보 처 리	1·2·3	1·2·3
문 화·예 술· 디 자 인·방 송	제 품 디 자 인	2	1
건 설	조 경	1·2·4	1·2·4
기 계	조 선	1	1
농 립 어 업	종 자	1·2·3	1·3
재 료	주 조	♣	3
음 식 서 비 스	중 식 조 리	♣	3
건 설	지 적	1·2·3	1·2·3
사회복지·종교	직업상담사1급	♣	4
사회복지·종교	직업상담사2급	♣	1·2·3
전 기·전 자	철 도 신 호	3	2
운 전·운 송	철 도 운 송	♣	2·4
기 계	철 도 차 량	2	1
건 설	철 도 토 목	2	2
안 전 관 리	초음파비파괴 검사	1·3	1·3
농 립 어 업	축 산	1·2·4	1·4
건 설	측 량 및 지 형 공 간 정 보	1·2·4	1·2·4
기 계	치 공 구 설 계	♣	3
안 전 관 리	침투비파괴검사	1·2·4	1·2·4
경 영·회 계· 사 무	컨벤션기획사 1 급	♣	4
경 영·회 계· 사 무	컨벤션기획사 2 급	♣	1·2·3
문 화·예 술· 디 자 인·방 송	컬 러 리 스 트	1·2·3	1·2·3
기 계	컴퓨터응용가공	♣	1·2·4
건 설	콘 크 리 트	1·2·3	2·3
영 업·판 매	텔 레 마 케 팅 관 리 사	♣	1·2·3
건 설	토 목	1·2·3	1·2·4

직무분야	종 목 명	시 행 회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환경·에너지	토 양 환 경	1·2·4	♣
재 료	판 금 제 관	♣	2
섬 유·의 복	패 션 디 자 인	♣	1·4
섬 유·의 복	패 션 머 천 다 이 징	♣	1·3
환경·에너지	폐 기 물 처 리	1·2·4	1·2·4
경 영·회 계· 사 무	포 장	2	2
재 료	표 면 처 리	♣	3
경 영·회 계· 사 무	품 질 경 영	1·2·4	1·2·4
기 계	프 레 스 금 형	♣	2
기 계	프레스금형설계	2	♣
인쇄·목재· 가 구·공 예	피 아 노 조 율	♣	2
섬 유·의 복	한 복	♣	3
음식서비스	한 식 조 리	♣	1·3
기 계	항 공	3	1·2·4
건 설	항 로 표 지	3	2
건 설	해 양 공 학	2	♣
건 설	해양자원개발	2	♣
건 설	해 양 조 사	♣	2
건 설	해 양 환 경	2	♣
화 학	화 공	1·2·3	♣
광 업 자 원	화 약 류 관 리	1·4	1
화 학	화 약 류 제 조	1	1
안 전 관 리	화재감식평가	2·4	2·4
화 학	화 학 분 석	1·2·4	♣
농 립 어 업	화 훼 장 식	3	4
환경·에너지	환경위해관리	3	♣

- 기능사 종목별 시행회

※ 아래표 중 시행구분의 “-”는 필기시험이 없는 종목, 시행회의 “상시”는 상시시행 종목임,
전 종목 필기시험 CBT 시행

직무분야	종 목 명	구분	시행회	직무분야	종 목 명	구분	시행회
전 기 · 전 자	3D프린터운용		3·4	기 계	기 계 정 비		3
인 쇄 · 목 재 · 가 구 · 공 예	가 구 제 작		2·3	건 설	기 중 기 운 전		1·2·3·4
안 전 관 리	가 스		1·2·3·4	운 전 · 운 송	농 기 계 운 전		2·3·4
건 설	거 푸 집	-	1·2·3·4	기 계	농 기 계 정 비		1·2·4
기 계	건설기계정비		1·2·3·4	건 설	도 배	-	1·2·4
건 설	건설재료시험		1·2·4	인 쇄 · 목 재 · 가 구 · 공 예	도 자 공 예		2
건 설	건 축 도 장	-	1·2·3·4	건 설	도 화	-	3
건 설	건 축 목 공	-	1·4	기 계	동력기계정비		3
기 계	공 유 압		1·2·3·4	식 품 가 공	떡 제 조		3·4
기 계	공조냉동기계		1·2·3·4	건 설	로 더 운 전		1·2·3·4
재 료	광 고 도 장		2	건 설	롤 러 운 전		1·2·4
전 기 · 전 자	광 학		2	인 쇄 · 목 재 · 가 구 · 공 예	목 공 예		1
건 설	굴 삭 기 운 전		상시	이 용 · 숙박 · 여 행 · 오락 · 스 포 츠	미 용 (네 일)		상시
기 계	케도장비정비		4	이 용 · 숙박 · 여 행 · 오락 · 스 포 츠	미 용(메이크업)		상시
인 쇄 · 목 재 · 가 구 · 공 예	귀 금 속 가 공		2·4	이 용 · 숙박 · 여 행 · 오락 · 스 포 츠	미 용 (일 반)		상시
재 료	금 속 도 장		4	이 용 · 숙박 · 여 행 · 오락 · 스 포 츠	미 용 (피 부)		상시
재 료	금속재료시험		1·4	건 설	미 장	-	3
재 료	금속재창호	-	2·4	기 계	반 도 체 장 비 유 지 보 수		4
기 계	금 형		1·2·4	안 전 관 리	방 사 선 비 파 괴 검 사		1·2·4
기 계	기계가공조립		1·3·4	건 설	방 수	-	1·2·3·4

직무분야	종 목 명	구분	시행회
건설배관			2·4
농림어업버섯종균			1·2·3·4
인쇄·목재·가구·공예보석가공			3
인쇄·목재·가구·공예보석감정			1·3
음식서비스복어조리			2·4
건설불도저운전			2·4
건설비계		-	1·2·4
인쇄·목재·가구·공예사진			2·3·4
농림어업산림			1·2·3
기계생산자동화			1·2·3·4
건설석공		-	3
인쇄·목재·가구·공예석공예			2
기계선체건조			3
기계설비보전			1·2·3·4
섬유·의복세탁			1·2·3·4
농림어업수산양식			2
기계승강기			1·2·3·4
농림어업식육처리			1·2·4
식품가공식품가공			2·3
섬유·의복신발류제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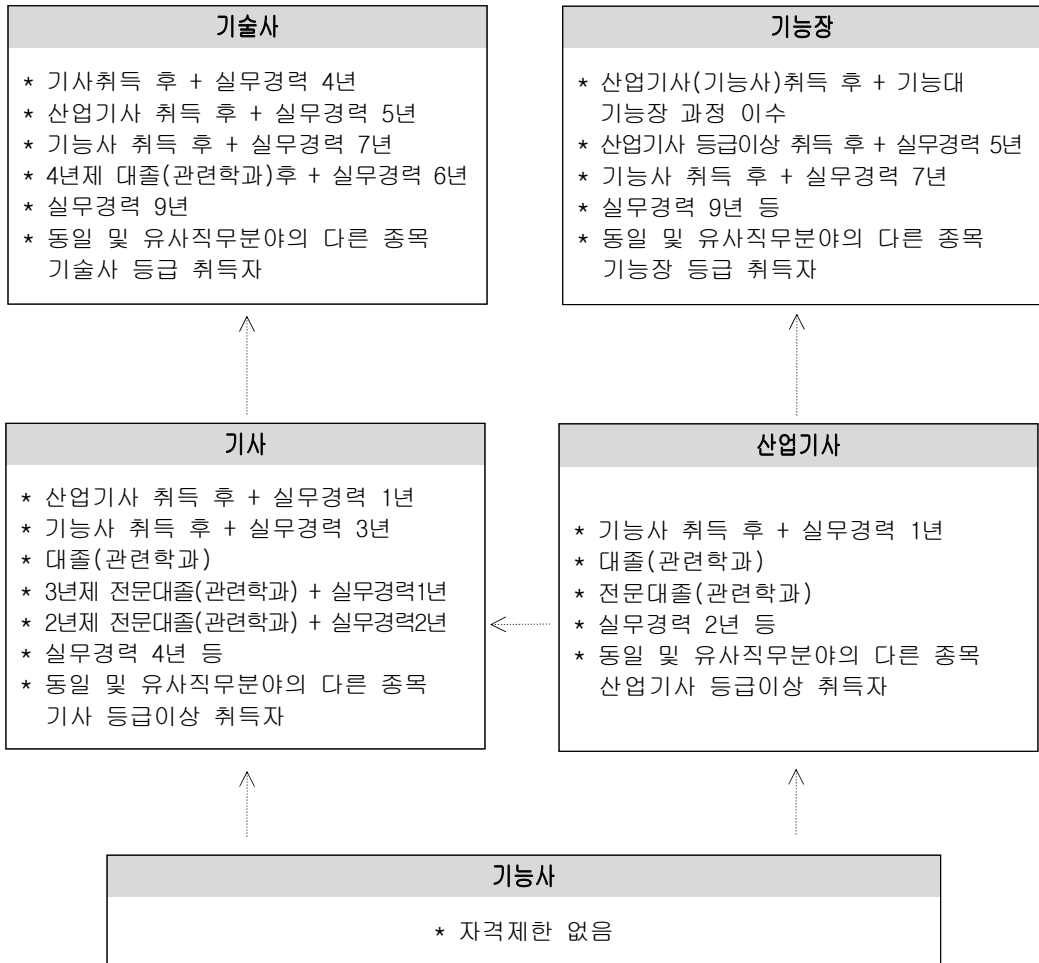
직무분야	종 목 명	구분	시행회
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2·3·4
건설	실내건축		1·2·3·4
재료	압연		1·2·3
섬유·의복	양복		3
음식서비스	양식조리		상시
섬유·의복	양장		1·2·4
건설	양화장치운전		3
환경·에너지	에너지관리		1·2·3·4
기계	연삭		3
재료	열처리		1·2·4
섬유·의복	염색(날염)		3
섬유·의복	염색(침염)		3
건설	온수온돌	-	1·2·3·4
재료	용접		1·2·3·4
농림어업	원예		2
재료	원형		4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웹디자인		1·2·3·4
화학	위험물		1·2·3·4
농림어업	유기농업		1·2·3
건설	유리시공	-	3

직무분야	종 목 명	구분	시행회	직무분야	종 목 명	구분	시행회
전 기 · 전 자	의 료 전 자		2·3	전 기 · 전 자	전 자 캐 드		1·2·3·4
이 용 · 숙 박 · 여 행 · 오 략 · 스 포 츠	이 용		1·2·3·4	기 계	정 밀 측 정		2
인 쇄 · 목 재 · 가 구 · 공 예	인 쇄		4	정 보 통 신	정 보 기 기 운 용		1·2·3·4
음 식 서 비 스	일 식 조 리		상시	정 보 통 신	정 보 처 리		1·2·3·4
농 립 어 업	임 산 가 공		1	재 료 제	강		1·3·4
농 립 어 업	임 업 종 묘		2	식 품 가 공 제	과		상시
안 전 관 리	자기비파괴검사		1·3·4	식 품 가 공 제	빵		상시
기 계	자동차보수도장		2·3·4	재 료 제	선		1·3·4
기 계	자 동 차 정 비		1·2·3·4	문 화 · 예 술 · 디 자 인 · 방 송	제 품 응 용 모 델 링		4
기 계	자동차차체수리		1·2·4	건 설 조	경		1·2·3·4
건 설	잠 수		2·3·4	건 설 조	적	-	3
전 기 · 전 자	전 기		1·2·3·4	음 식 서 비 스	조 주		1·2·3·4
건 설	전 산 응 용 건 축 도 제		1·2·3·4	농 립 어 업	종 자		1·2·3
기 계	전 산 응 용 기 계 도 제		1·2·3·4	재 료 주 조			4
기 계	전 산 응 용 조 선 도 제		4	음 식 서 비 스	중 식 조 리		상시
건 설	전 산 응 용 토 목 도 제		1·3·4	건 설 지 계 차 운 전			상시
전 기 · 전 자	전 자 계 산 기		1·2·4	건 설 지 도 제 작		-	2·3
전 기 · 전 자	전 자 기 기		1·2·3·4	건 설 지 적			1·4
기 계	전자부품장착		1·2·3	건 설 천 공 기 운 전			1·2·4
인 쇄 · 목 재 · 가 구 · 공 예	전 자 출 판		1·3·4	건 설 천 장 크 레 인 운 전			1·3·4

직무분야	종 목 명	구분	시행회
건설	철근	-	2·4
전기·전자	철도전기신호		2
기계	철도차량정비		2
건설	철도토목		2
안전관리	초음파비파괴검사		1·2·3
재료	축로		2
농림어업	축산		2·3
건설	측량		1·3·4
안전관리	침투비파괴검사		1·3·4
건설	컨테이너크레인운전		2·4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컴퓨터그래픽스운용		1·2·3·4
기계	컴퓨터응용밀링		1·2·3·4
기계	컴퓨터응용선반		1·2·3·4
건설	콘크리트		1·2·3
건설	타워크레인운전		1·2·4
건설	타일	-	1·2·3·4
재료	특수용접		1·2·3·4

직무분야	종 목 명	구분	시행회
재료	판금제관		1
재료	표면처리		4
재료	플라스틱창호		2·3·4
인쇄·목재·가구·공예	피아노조율		1
섬유·의복	한복		2
음식서비스	한식조리		상시
기계	항공기관정비		2·3·4
기계	항공기체정비		1·2·3·4
건설	항공사진	-	3
기계	항공장비정비		2·4
기계	항공전자정비		4
건설	항공표지		3
광업자원	화약취급		4
화학	화학분석		1·2·3
농림어업	화훼장식		1·2·3·4
환경·에너지	환경		1·2·3·4

응시자격 조건체계



서비스분야 1급, 2급 혹은 단일등급

- * 서비스분야 응시자격은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11의 4 참조)

응 시 자 격

등 급	응 시 자 격
기 술 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 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 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 능 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 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2.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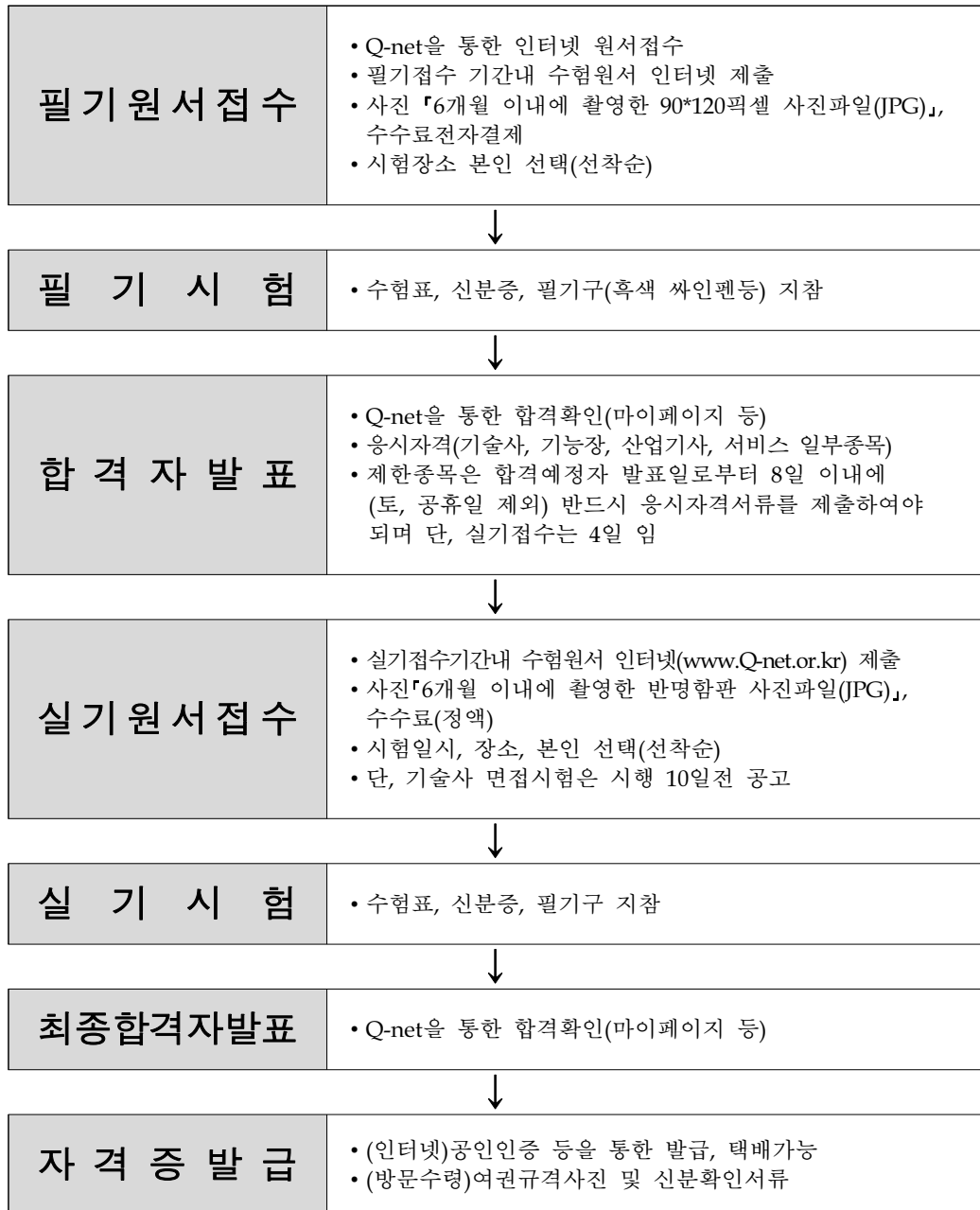
등 급	응 시 자 격
기 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6.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8.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 능 사	제한없음

비 고

1.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 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 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격검정 응시절차



지역본부 및 지사 안내

기 관 명	주 소	검정안내 전화번호			
		DDD	기술자격	전문자격	자격증발급
서울지역본부	025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 벚꽃로 279	02	2137-0502~6 2137-0521~4 2137-0562~9	2137-0551~5	2137-0509
서울동부지사	03302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 100-23	02	2024-1704~12	2024-1721~2	2024-1729
서울남부지사	072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 나루로 110	02	6907-7152~7, 6907-7133~9		6907-7137
강원지사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원창 고개길 135	033	248-8511~2		248-8516
강원동부지사	25440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	650-5700		650-5700
부산지역본부	46519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	330-1910		330-1910
부산남부지사	48518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051	620-1910		620-1910
울산지사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7	052	220-3211~8		220-3223
경남지사	51519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	212-7200		212-7200
대구지역본부	427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	580-2354~61	580-2351~3, 2372~4	580-2362
경북지사	36616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 온천길 42	054	840-3031~3		840-3035
경북동부지사	37580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	230-3202~3		230-3202
충부지역본부	21634 인천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2	820-8600		820-8600
경기지사	166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031	249-1201		249-1201
경기북부지사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031	850-9100		850-9127
경기동부지사	133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	750-6215~7, 6221~5, 6227~9		750-6215
광주지역본부	61008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	970-1761~9 (상시)1776~9	970-1771~5	970-1768
전북지사	548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	210-9200		210-9200
전남지사	57948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	720-8500		720-8500
전남서부지사	58604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061	288-3323		288-3327
제주지사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	729-0701~2		729-0701~2
대전지역본부	35000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	580-9131~9 (상시)9141~4	580-9151~7	580-9147
충북지사	28456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043	279-9041~5		279-9044
충남지사	3108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 1길 27	041	620-7632~8 (상시)7691~2	620-7644	620-7639

※ 청사이전 및 조직변동 시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 추가될 수 있음

※ 서울동부지사의 경우 '서울서부지사'로 명칭변경 예정

검정기준

자격등급	검정기준
기술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장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산업기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능사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직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검정방법

자격등급	검정방법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기술사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구술형 면접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능장	객관식 4지택일형(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작업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사	객관식 4지택일형(과목당 20문항)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산업기사	객관식 4지택일형(과목당 20문항)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기능사	객관식 4지택일형(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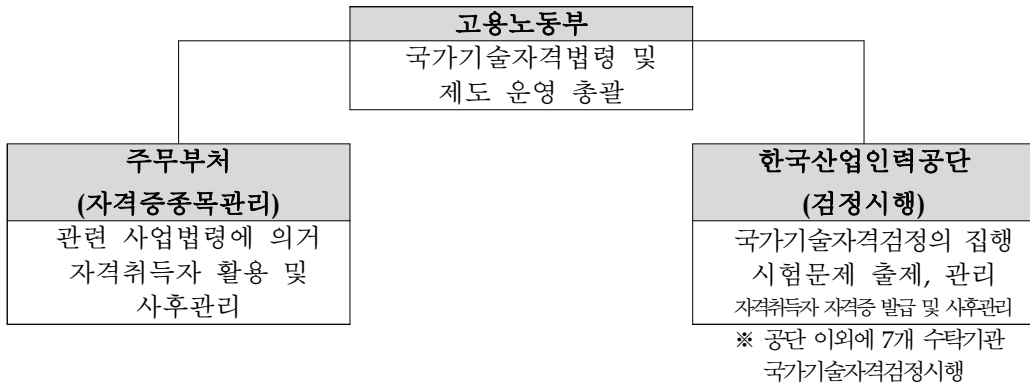
검정수수료

등 급	필기시험	실기시험
기 술 사	67,800	종목별 상이
기 능 장	34,400	
기사(산업기사)	19,400	
기 능 사	11,900	

※ 추후 변동 가능

국가기술허자격제 도 안내

국가기술 자격제도 운영



자격증 발급

I.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제도 안내

1. 국가기술자격증 발급목적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하는 목적은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국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상응한 자격을 부여·공인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믿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권익보호 및 우대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제도 변천 내력

종전 각 주무부처별로 수행하던 자격증 발급업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79. 8. 1부터 구 한국기술검정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단의 명칭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82.3.18),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91.4.15)을 거쳐 현재의 한국산업인력공단('98.1)으로 변경되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종목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법 등 26개 개별사업법에 의한 자격종목 취득자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92. 3. 1부터 산업통상자원부소관 무선설비 자격종목 자격증 발급업무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게 됨으로써 전파통신, 전파전자 종목과 대한상공회의소 시행종목을 제외한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업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3.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종목 및 등급, 취업처 명칭 및 취업처의 소재지 등을 전산 입력 작성하여 관리합니다. 19개 관련 주무부처에는 각종 개별사업에서 정한 인·허가 업무의 관리 및 자격취득자의 활용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분기 통보합니다. 유관기관 및 기업체, 단체 등에는 자격취득자의 자격취득사항 조회, 확인 또는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기술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있습니다. 국가비상대비 자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자원종목 취득자 현황을 통보합니다.

4. 국가기술자격증 발급대상

신규발급 :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처음으로 자격증을 발급

재발급 :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격증을 다시 발급

인정발급 : 국가기술자격법 제정 이전 다른 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에게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동종동등한 자격증을 발급

5. 국가기술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내용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종목 및 등급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정정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취업하고 있는 취업처 명칭 및 소재지, 학력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그 변경 내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정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6.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자격취득 사실확인이 필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한글, 영문)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II.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신청 안내

1. 신규발급

○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처음으로 자격증을 발급

가. 신청방법 : 인터넷 발급 및 방문발급 가능

나. 발급기간 : 합격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인터넷 발급 방법

- 1) 인터넷 발급 신청시 택배 수령 및 방문 수령 가능
- 2) 인터넷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기간 : 월요일~일요일(24시간) 연중 무휴
- 3) 인터넷을 이용한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배송신청가능자 : 공단이 본인 사진확인용 사진 확보
(2005년 9월이후 자격취득자 및 공인인증 가능자)
 - 방문수령가능자 : 공인인증 불가
- 4) 인터넷을 이용한 자격증 발급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분미확인자
 - 자격취득사항(성명, 주민번호, 종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5) 인터넷 자격증 발급시 비용
 - 수수료 : 3,100원
 - 택배비 : 2,560원(방문 수령시 택배비 없음)

라. 방문발급

- 1) 방문발급시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 본인이 직접 방문시는 본인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시는 본인신분증+대리인신분증
 - 미성년자의 신분증으로 학생증을 지참할 경우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명시된 학생증,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애플은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함께 지참
 - 사진 1매(증명사진)
 - 수수료 : 3,500원
 - 국가기술자격증발급신청서(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 수험표(분실한 경우 제외)
 - 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입증서류(변경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마. 발급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

2. 재발급

-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격증을 다시 발급

가. 신청방법 : 인터넷 발급 및 방문발급 가능

나. 인터넷 재발급 방법

- 1)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시 택배 수령 및 방문 수령
- 2) 인터넷 자격증 재발급 신청 접수기간 : 월요일~일요일(24시간) 연중 무휴
- 3) 인터넷을 이용한 자격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배송신청가능자 : 공단이 본인 사진확인용 사진 확보
(2005년 9월이후 자격취득자 및 공인인증 가능자)
 - 방문수령가능자 : 공인인증 불가
- 4) 인터넷을 이용한 자격증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분미확인자
 - 자격취득사항(성명, 주민번호, 종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5) 인터넷 자격증 재발급시 비용
 - 수수료 : 3,100원
 - 택배비 : 2,560원(방문 수령시 택배비 없음)
- 6) 구(舊) 자격증
 - 관할 지부/지사로 우편송부(분실한 경우 제외) 또는 본인이 직접 파기

다. 방문발급

- 1) 재발급시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 본인이 직접 방문시는 본인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시는 본인신분증+대리인신분증
 - 미성년자의 신분증으로 학생증을 지참할 경우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명시된 학생증,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는 않은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함께 지참
 - 구(舊) 자격증(분실한 경우 제외)
 - 사진 1매(증명사진)
 - 수수료 : 3,500원
 - 국가기술자격증발급신청서(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 개명, 입양 등으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변경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라. 발급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

3. 인정발급

- 국가기술자격법 제정 이전 다른 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에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동종동등한 자격증을 발급

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신청(인터넷 발급 불가)

나. 발급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자격취득사항 조회 및 확인에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

다. 신청대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과 동종동등한 다른법령에 의한 자격 취득자

라. 준비물 : 구(舊)자격증 또는 면허증(분실한 경우 제외), 신분증(주민등록증), 사진(증명 또는 반명함, 자격증당 1매), 국가기술자격증발급신청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마. 수수료

1) 인터넷 발급 : 3,100원

2) 방문 발급 : 3,500원

바. 발급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

4. 기능사보 기능사자격 부여

- 1998. 5. 9일 이전에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1998. 5. 9 ~ 2001.12.31까지 해당 직무에 계속 재직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옮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직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계속 재직으로 인정하여 기능사 자격부여

가. 발급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경력사항 조회 및 확인에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

나. 대상종목 : 162종목("기능사 인정가능 종목" 참조)

※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이 없는 기능사보(42종목) 제외

다.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사진(증명 또는 반명함), 국가기술자격증발급신청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기능사 인정용 경력(재직) 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소정양식), 기타 경력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사업자 등록증, 사실확인서 등)

라. 참고사항 :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여 기능사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해당 기능사보 자격은 계속 유효

마. 발급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

< 기능사 인정가능 종목(162종목) >

기능사보	인정가능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가능 기능사
가구도장	건축도장	금속재창호	금속재창호
가구제작	가구제작	기계자수공예	자수(기계)
가스용접	가스용접	기계편물	편물(기계)
객화차정비	객화차정비	나전칠기(칠기)	칠기
깁부	광산보안(채광)	나전칠기(패세공)	패세공
거푸집	거푸집	날염	염색(날염)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기관정비	내선공사	전기
건설기계차체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내화물제조	세라믹
건축도장	건축도장	냉간압연	냉간압연
건축목공	건축목공	농기계운전	농기계운전
건축배관	배관	농산식품가공	식품가공
건축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다듬질	기계조립
고압가스기계	가스	단조	단조
고압가스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도배	도배
고압가스취급	가스	도자기공예	도자기공예
고압가스화학	가스	도자기제조	세라믹
공구제작	프레스금형	동력배선	전기
공기조화	공조냉동기계	목공예	목공예
공업배관	배관	목재가공	목재가공
과수재배	원예	목재창호	목재창호
광고도장	광고도장	미장	미장
광산기계	광산보안(기계)	밀링	밀링
광산기계설치	광산보안(기계)	발전기	전기
교환설비	통신기기	방수	방수
구들온돌	온수온돌	버섯종묘	버섯종균
굴진	광산보안(채광)	보석가공	보석가공
귀금속가공	귀금속가공	보선	보선
금속공예	금속공예	비계	비계
금속도장	금속도장	사진	사진
사진제판	사진제판	외선공사	전기
사출금형	사출금형	원예종묘	종자
석공	석공	원형	원형
석연마	석공예	유리시공	유리시공
석절삭	석공예	인발	인발
석조각	석공예	인쇄(블록판)	인쇄
선로설비	통신선로	인쇄사진	사진제판
선박기관정비	동력기계정비	인장공예	인장공예

기능사보	인정가능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가능 기능사
선박조립	선체건조	인판공예	인장공예
선반	선반	일반판금	판금
선체의장	선체건조	입업종묘	입업종묘
수산제조	식품가공	자동차기관정비	자동차정비
수자수공예	자수(수)	자동차새시정비	자동차정비
수편물	편물(수)	자동차전기정비	자동차정비
스크린인쇄	인쇄	자동차판금	자동차차체수리
시계수리	시계수리	잠수	잠수
시멘트제조	세라믹	전기계측제어	전기
시추	시추	전기기기	전기
신발류제조	신발류제조	전기도금	표면처리
신호보안	철도신호	전기용접	전기용접
양복봉제	양복(양복봉제)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양복재단	양복(양복패턴)	전자기기	전자기기
양장봉제	양장(양장봉제)	정련표백	염색(침염, 날염중 택일)
양장재단	양장(양장패턴)	정밀가공(다듬질)	기계조립
양화장치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밀가공(밀링)	밀링
어로	어로	정밀가공(보통선반)	선반
연삭	연삭	정밀가공(연삭)	연삭
열간압연	열간압연	정밀측정	정밀측정
열처리	열처리	정보통신운용	정보기기운용
열처리	열처리	제강(연속주조)	제강(연속주조)
영림	산림	제강(전기로)	제강(전기로)
오물처리사	환경	제강(전로)	제강(전로)
온수온돌	온수온돌	제과사	제과
제관	제관	축로	축로
제빵사	제빵	축산	축산
제선(고로, 소결)	제선	축산식품가공	식품가공
제지(펄프, 제지기기)	펄프제지	축소사진	사진
제판(볼록판)	사진제판	침염	염색(침염)
조경	조경	코크스	제선
조선요철	선체건조	콘크리트	콘크리트
조적	조적	타일	타일
조화공예	조화공예	타출판금	판금
주강용해	주조	특수도금	표면처리
주강조형	주조	특수용접	특수용접
주조	주조	평판인쇄	인쇄
지주	광산보안(채광)	평판제판	사진제판

기능사보	인정가능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가능 기능사
직물가공	직물가공	포장	포장
채소재배	원예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철골구조물	제관	플라스틱제품제조 (사출,압출)	플라스틱성형가공 (사출,압출)
철근	철근	한복	한복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기관정비	합판제조	목질재료
철도동력차전기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화훼재배	원예

< 기능사 인정불가 종목(42종목) >

- 가늘섬, 가발, 가죽처리, 고무제품제조, 고압합성, 굴착, 껌련제조, 그라비아인쇄, 기어절삭, 기와, 농예화학, 담배원료가공, 담배채건조, 담배제조기계, 담배포장, 등죽세공예, 문선식자(문선,식자), 방적기보전, 방적기조정, 보오링, 블록제판, 생사, 선광, 유리제조, 인쇄(오목판), 인형, 자료입력보, 전화교환, 제강(조괴), 제책, 제판(오목판), 주조조판, 지형연판, 직기보전, 직기조정, 초경가공, 타자기수리, 함석, 형평삭, 호부기조정, 홍삼제조, 화공기계

Ⅲ. 국가자격취득자 주의사항

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주의사항

- 가. 국가기술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종목 및 등급, 근무처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정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당해 국가기술자격은 취소 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
- 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자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양벌규정)에 의거 동일한 처벌을 받게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지체없이 기술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2. 면허발급 대상종목 안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 중 다음의 면허발급 대상종목 자격취득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영업(또는 중기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세부내용은 개별 관련법규에 의거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종목	면허발급기관	준비물	관련법규
굴삭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채석기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준설선운전 지게차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 국가기술자격증 - 주민등록증 - 사진 2매(3.5cm × 4.5cm) 등 - 제출서류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 서식] 참고 - 수수료 2,500원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한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중식조리 북어조리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보건소	- 국가기술자격증 - 주민등록증 - 제출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60호 서식] 참고 및 관할 시,군,구청 문의 - 수수료 5,500원	- 식품위생법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이용사 미용사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보건소	- 국가기술자격증 - 주민등록증 - 사진 2매(3.5cmX4.5cm) 등 - 제출서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7호 서식]참고 및 관할 시,군,구청 문의 - 수수료 5,500원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3. 폐지종목 자격증 발급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수요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을 개편하여 개정된 법률에 의거 현재 소지하신 자격증을 개편된 자격 종목 및 등급으로 변경처리(확인 또는 재발급) 가능

구 분	당 초	개 정	개정시행
계 열	기술계, 기능계	계열구분폐지	'99. 3. 28
자격등급	기술사	기술사	
	기능장	기능장	
	기사1급	기사	
	기사2급, 다기능기술자, 기능사1급	산업기사	
	기능사2급	기능사	
	기능사보	폐지	

※ 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종목의 기술자격은 종전의 법령에 의한 기술자격 명칭을 계속 보유하도록 규정

과정평가형 제도

1. 제도 소개

○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산업현장 일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의유기적 연계강화로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을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후,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 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주무부 장관이 다음 각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기존 자격제도와 차이점

구분	검정형	과정형
응시자격	학력, 경력요건 등 응시요건 충족자	해당 과정을 이수자
평가방법	지필평가 · 실무평가	내부평가 · 외부평가
합격기준	필기 : 평균 60점 이상 실기 : 60점 이상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결과를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자격증	기재내용 : 자격종목, 인적사항	검정형 기재내용 + 교육·훈련기관명, 교육·훈련기간 및 이수시간, NCS 능력단위명

○ 제도의 장점

가. 자격취득희망자

1) 취득자격 제한 無

- 해당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사람
- 별도 응시자격 없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응시 가능

2) 과정 참여 혜택

- 계좌제 훈련의 경우 400만원 한도에서 자비부담 면제
- 별도의 상담기간 없이 참여가능

3) 교육·훈련 동시 진행

- 1차 평가(지필)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장소, 2차 평가(실무)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평가 시행
- 교육·훈련을 받은 모든 능력단위가 기재된 과정평가형 자격증 발급

4) 현장 중심 교육·훈련

- 산업 현장 중심의 지식, 기술 습득
- NCS 기반의 체계적 교육 · 훈련으로 경력개발 유리

나. 교육&훈련기관

- 1) NCS 기반 과정 운영 컨설팅 지원
- 2)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관으로서 범국민적 홍보 가능
- 3)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경우 훈련생 모집에 유리

다. 기업

- 1) 실무 중심의 자격 취득자 채용용이
- 2) 채용 및 교육·훈련비용 절감 가능
- 3) 근로자 경력 개발 체계 구축용이

2. 시행종목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배관기능사, 건축목공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잠수기능사, 잠수산업기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지적산업기사, 측량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등 111종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q-net.or.kr, c.q-net.or.kr) 참고